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5. 20 선고 2020나11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민중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송홍식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5. 20.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230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7. 6. 16. 체결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6. 29. 접수 제111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6. 16. 접수 제12792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쪽 1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차 증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설령 위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더라도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E이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한 것이므로, E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담보권설정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3) 갑 제2호증, 을가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 부안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E이 2016.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증축 및 용도변경하면서 'K요양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사실, 같은 날 E이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90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E이 2016. 6. 29.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5일이 경과한 2016. 7. 4. 위 K요양원의 입소정원이 21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된 사실, 2017. 5. 17.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 노인복지시설로 증축 및 용도변경되었고, 2017. 5. 24. 위 K요양원의 입소정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 7. 31. 입소정원이 35명에서 39명으로 다시 변경된 사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필요한 점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입소정원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면적 증가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E이 자금을 융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E의 계좌로 2016. 6. 29. 및 2017. 6. 16. 각 1억 원을 입금한 이후 그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위 돈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E의 기존 채무가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확장과 추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의 지출이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확장과 추진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설령 E이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인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이 피고로부터 융통한 자금 대부분이 수일 내에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이후 E의 변제자력이나 위 노인복지시설의 경영상태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L조합의 상무로서 대출 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는 시동생 M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없이 L조합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L조합의 대출금보다 3억 원가량 높았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1년여 동안 E이 연체 없이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사이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E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E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갑 제2, 3호증, 을가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M는 L조합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서 E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였고, E이 추가적인 자금 대출을 요구하자 형수인 피고를 소개해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L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6. 6. 29. E에게 1차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한 이후 2017. 6. 16. 2차로 1억 원을 대여할 때까지 E이 피고에게 연체 없이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변경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L조합의 대출 업무 담당자였던 M는 E이 L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형수인 피고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의 직원이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개인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시도 E에 대한 L조합의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E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② M의 직업과 경력, E이 기존에 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실을 M가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는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E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외에도 사채(私債)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을가 제10호증의 1(진술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 역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2호증(차용증)에도 E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E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E이 노인복지시설의 증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시설이 증축된 것은 2016. 2. 12. 및 2017. 5. 17.인데 피고가 E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2016. 6. 29. 및 2017. 6. 16.로 모두 증축이 완료된 이후이고, 피고가 대여한 돈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아닌 E의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경미, 판사 홍승모, 판사 정순열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부안군 대 2096㎡

2. 전라북도 부안군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 슬라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노인복지시설 305.45㎡

1층 수리점(카센터)

130.1㎡

2층 노인복지시설 288.53㎡

2층 노인복지시설 154.06㎡

3층 노인복지시설 160.02㎡

3층 경량철골조

노인복지시설 13.13㎡

3. 전라북도 부안군 답 310㎡

위 부동산의 소유권 중 공유자 의 423분의 245지분

4. 전라북도 부안군 답 95㎡

